

■ 인지세 안내

「인지세법」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,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/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75,000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납부 대상 및 납부기간·방법

※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구분	내용
납부 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간·방법	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납부 세액

과세문서	세액	수입인지가격
부동산, 선박, 항공기 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	15만원(사업주체 7만 5천원 / 계약자 7만 5천원)

■ 온라인 신청 방법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75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재발행 불가)



■ 오프라인 신청 방법

- 1**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(방문 전 해당처 확인 요망)
- 2**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(7만 5천원)
- 3** 전자수입인지 발급